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49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치를 위한 근거를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및 보행환경과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다.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신설(안 제5조 및 제7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8조)
-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문화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발의됨.

나. 주요 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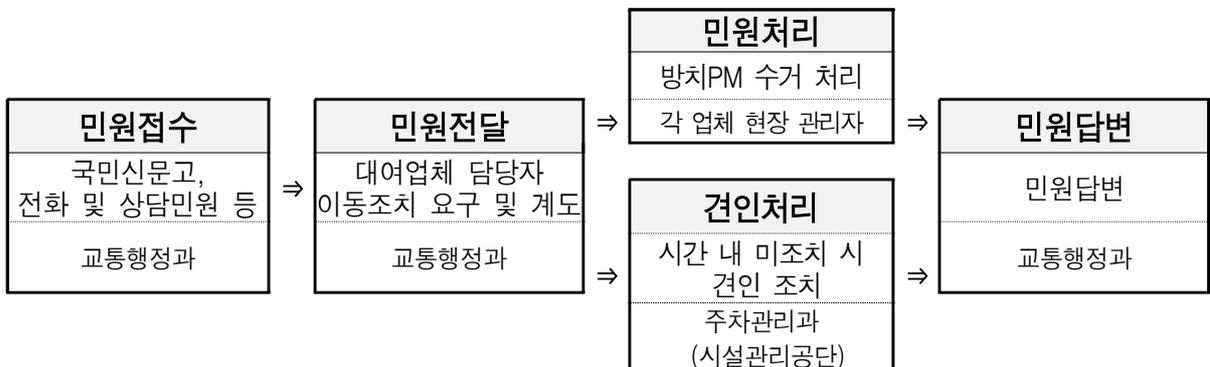
□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업자 현황

- 금천구 운영업체 3개

서비스명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약 1,000대)		
	지쿠터	일레클	스윙
운영대수	300	400	300

□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현황

- 방치 킥보드 수거요청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이용자·대여사업자의 주차금지 및 무단방치에 대한 책무를 신설함

3)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신설
(안 제5조 및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함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 규정이 있으나 대여사업자에 대한 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권고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주차장·보관소 설치,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등 조례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¹⁾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무단방치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2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③ 생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